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25호 2018. 1. 2(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호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3-298호선 외 5개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호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공고 ----- 4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4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45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호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18호 (2017.12.26.)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내용

1. 명칭: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사업구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시행예정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288번지 일원
4. 추진위원회승인일: 2009. 9. 11.
5. 정비구역 지정 해제일: 2017. 12. 26.
6. 추진위원회승인취소일: 2018. 1. 2.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8-2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도로

1) 도로 결정 총괄표

구분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50	12,421.0	199,152.3	5	2,748.0	49,940.0	26	5,431.0	51,045.5	19	4,233.0	90,195.0
변경	합계	51	12,442.0	199,239.2	5	2,748.0	49,940.0	26	5,431.0	51,045.5	20	4,254.0	90,279.0
기정	광로	2	2,294.0	73,781.0	-	-	-	-	-	-	2	2,294.0	73,781.0
기정	중로	11	3,678.0	62,902.0	3	2,246.0	44,920.0	3	434.0	6,006.0	5	998.0	11,976.0
기정	소로	37	6,440.0	54,497.5	2	502.0	5,020.0	23	4,997.0	45,039.5	12	941.0	4,438.0
변경	소로	38	6,461.0	54,581.5	2	502.0	5,020.0	23	4,997.0	45,039.5	13	962.0	4,522.0
기정	가각 및 기타	-	-	7,971.8	-	-	-	-	-	-	-	-	-
변경	가각 및 기타	-	-	7,974.7	-	-	-	-	-	-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3	4	국지	21	대2-61	일반주택지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 3-13	· 신설 - 연장 : 21m - 폭원 : 4m	▶ 34가구 4획지 획지 계획(분할) 변경에 따른 도로결정 (도로시설물 조성 완료 후 기부채납)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2	34	2,457.4	1	391.3		A-2	34	2,370.5	1	391.3	도로결정 86.9㎡
			2	167.1					2	167.1	
			3	308.9					3	308.9	
			4	1,110.8					4-1	189.5	
									4-2	184.9	
									4-3	268.8	
									4-4	190.5	
									4-5	190.2	
			5	479.3					5-1	234.9	
									5-2	244.4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4	획지의 분할	획지분할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5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4점, 지적도근점 12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연번	지적기준점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명칭	번호	X(m)	Y(m)	X(m)	Y(m)	X(m)	Y(m)	
별지 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구
- 측량연월일 : 2017년 11월 01일

4.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열람안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연번	지적기준점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명 칭	번호	X(m)	Y(m)	X(m)	Y(m)	X(m)	Y(m)	
1	지적삼각보조점	보221	543672.16	172374.27					
2	지적삼각보조점	보222	543752.40	172269.65					
3	지적삼각보조점	보223	543172.61	172109.95					
4	지적삼각보조점	보224	543109.94	172182.71					
5	지적도근점	세397	543716.02	172325.68					
6	지적도근점	세9098	543485.23	172167.25					
7	지적도근점	세9099	543408.82	172114.05					
8	지적도근점	세399	543357.19	172074.49					
9	지적도근점	세400	543329.48	172020.24					
10	지적도근점	세9100	543639.67	172348.57					
11	지적도근점	세9101	543547.79	172348.51					
12	지적도근점	세9102	543533.96	172336.29					
13	지적도근점	세9103	543442.03	172349.43					
14	지적도근점	세9104	543392.02	172246.04					
15	지적도근점	세9105	543259.64	172287.05					
16	지적도근점	세9106	543228.09	172314.1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298호선 외 5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298호선 외 5 노선, 사업명 : 중로3-298호선 외 5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중3-298호선 외 5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당초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298호선 외 4개 노선)

· 중3-298호선의 4개 노선 실시계획인가[서구고시 제2017-36호(2017.3.27.)]

· 소1-54호선 실시계획인가[서구고시 제2017-50호(2017.5.01.)]

-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298호선 외 5개 노선)

· 중3-298호선의 5개 노선 실시계획인가[서구고시 제2017-143호]

○ 명칭

- 당초 : 중3-298호선 외 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 변경 : 중3-298호선 외 5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면적 (㎡)							
변경 없음	중로	3	298	12	1,123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 1-47	일반도로	2017. 2. 6.	-
변경 없음	중로	3	299	12	3,131.4	국지도로	264	대로 2-32	소로 1-47	일반도로	2017. 2. 6.	-
변경	소로	1	47	10	2,750.6	국지도로	265	소로 3-354	대로 2-32	일반도로	2017. 2. 6.	연장 표기오류 정정
변경 없음	소로	1	52	10	714	국지도로	69	중로 3-299	교통광장	일반도로	2017. 2. 6.	-
변경 없음	소로	1	53	10	894	국지도로	79	가좌동 556-64 (소로 1-54)	중로 3-299	일반도로	2017. 2. 6.	-
변경 없음	소로	1	54	10	1,376.2	국지도로	126	가좌동 556-54	가좌동 556-63	일반도로	2017. 2.27.	-

※ 소로 1-47호선 (연장 표기오류 정정)

당초: 연장 371m(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7-143호) ⇒ 정정: 연장 2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코스모화학(주) 함 재 경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3번 참조

○ 용지조서

번호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권리 종류	성명	
1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3-9	도로	3,871.0	2,992.6	인천시 서구청	-	-	
2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3-24	대지	17.3	17.3	(주)에스엔피월드	-	-	
3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3-25	대지	19.6	19.6	유준산업(주)	-	-	
4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4-15	대지	74.5	74.5	유준산업(주)	-	-	
5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4-16	대지	18.9	18.9	유준산업(주)	-	-	
6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4-17	대지	31.5	31.5	유준산업(주)	-	-	
7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4-18	대지	31.1	31.1	유준산업(주)	-	-	
8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274-19	대지	69.6	69.6	유준산업(주)	-	-	
9	당초	서구 가좌동	556-1	공장 용지	1,602.5	18.5	한국이엔비(주)	-	-	지적분할
	변경	서구 가좌동	556-68	공장 용지	18.5	18.5	한국이엔비(주)	-	-	
10	변경 없음	서구 가좌동	557-1	도로	600.0	600.0	인천시 서구청	-	-	
11	당초	서구 가좌동	556-64	공장 용지	6,703	6120.2	코스모화학(주)	-	-	지적분할 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변경	서구 가좌동	556-64	공장 용지	6,115.6	6,115.6	코스모화학(주)			
합 계				당초	13,039.0	9,993.8	감)4.6㎡ 556-64번지 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변경	10,867.6	9,989.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서로 34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 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4-110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4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1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7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9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9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45번길 3 (원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5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7 (가좌동)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4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14 (가좌동)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12-4 (원창동)	20171025	원석로 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부 사항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수익발생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설물 사후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임시시장의 정의 중 등록을 신고로 변경(안 제2조)
- 전통시장의 구역에 대한 내용을 변경(안 제3조)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의 일부변경(안 제5조)
-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규정을 변경(안 제18조)
-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등록취소 규정 삭제(안 제28조)
-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관리 수익금 사용 규정 신설(안 제32조2)
-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관리 수익금 정산 규정 신설(안 제32조3)
-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위탁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32조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경제에너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34) 또는 Fax(560-27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 삭제 및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에 따른 관련조문 신설
주 요 내 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와 상충되게 임시시장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신고로 개정(안 제2조 제3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1호」 및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따라 시장의 구역에 대한 범위를 개정 (안 제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에 따라 “시장안의 도로”와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 변경(안 제5조) ○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를 (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의 조치)로 변경(안 제1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와 상충되는 일부 조문 삭제(안 제2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와 상충되는 일부 조문삭제(안 제28조)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6-454호)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현대 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관련조문 삽입 (안 제32조의 2~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4조제65조제67조제7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9조제3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2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일부 사항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수익발생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설물 사후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시장의 정의 중 등록을 신고로 변경(안 제2조)
- 전통시장의 구역에 대한 내용을 변경(안 제3조)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의 일부변경(안 제5조)
-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규정을 변경(안 제18조)
-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등록취소 규정 삭제(안 제28조)
-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관리 수익금 사용 규정 신설(안 제32조2)
-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관리 수익금 정산 규정 신설(안 제32조3)
-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위탁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32조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등록”을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중소벤처기업부가”로, “범위 내”를 “범위”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차장 :”을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리개 :”를 “가리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화장실 :”을 “화장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 :”를 “도로:”로, “폭 4미터 이상을”을 “충분히 도로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입도로: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위하는점포”를 “영위하는 점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신고취소)”를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취소”를 “법 제 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변경일로”를 “변경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사업관련”을 “사업 관련”으로, “기산하여”를 “기산(起算)하여”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익금 사용)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분기별 1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상인"이라 함은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p> <p>3."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p> <p>4."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이란 ----- ----- ----- ----- ----- - 사람을 ---.</p> <p>2.----란 ----- ----- ----- ----- ----- -.</p> <p>3.-----이란 ----- ----- ----- 기간 동안 ----- 신고-- -----.</p> <p>4.----란----- ----- ----- -----</p>

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이란 -----

 -----.

6.“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이란 -----

 -----.

7.“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

7.-----란 -----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
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

8.”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
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
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
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
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
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
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
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
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
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
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

-----.

8.-----란 -----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
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

 ----- 범위 -----

 ----- 범 -----
위-----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주차장: -----

 -----.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황색선으로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 가리개: -----

-----.

3. 화장실: -----

--. -----

-----.

4. ----- 도로: -----

----- 충분히 도로를 -----

-----.

5. 진입도로: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생략)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계 없 -----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
----- 영위하는 점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서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생략)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 설>

----- 사업
관련 -----
----- 기산(起算)하여 -----
-----.

<삭 제>

제32조의2(수익금 사용)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

<신 설>

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분기별 1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4(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

제40조(지방세의 준용) -----

----- 인천광역시 서

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10.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042-481-4574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 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2017.7.26.>

[제목개정 2013.6.11.]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4. 공설시장
 -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10.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 항제2호	300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목개정 2013.6.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042-481-4516

-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 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호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공고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30호(2006.8.1.) 및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4호(2009.6.15.)에 반영되어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원의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원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정비구역 명칭
 -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 명칭 :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 사업의 면적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주택재개발	석남4	석남동 546번지 일원	72,26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4호 (2009.6.15.)

4. 해제 이유 및 근거

○ 해제 이유

-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2)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해제 요청

○ 해제 근거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제2항제2호 나목

5. 의견제출

- 기간 : 2018.1.2.부터 2018.1.31.까지 (30일간)
- 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 석남2동 주민센터
- 서식 : [붙임1] 의견제출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에서 내려받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3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검단2호 완충녹지 조성사업』 과 관련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검단2호 완충녹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38-2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시송달 공고 내용

- 공고명 :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 열람공고 통지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01. 02. ~ 2018. 01. 16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사업구간 편입 토지내역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송○식	인천 북구 작전동 500 현대아파트 20동 1605호	오류동	737-2	대	231㎡	231㎡	이해관계인 (가등기)

4.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제2018-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1. 2. ~ 2018. 1. 16.(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인천95가1051외 16대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인천95가1051	강미*	2017.12.21	등록
2	48도1215	이옥*	2017.12.19	등록
3	39누6013	홍성*	2017.12.15	등록
4	91고7526	박승*	2017.12.15	등록
5	53더4778	유정*	2017.12.15	등록
6	09수8924	김현*	2017.12.14	해제
7	47고5309	이중*	2017.12.12	등록
8	86두6196	추연*	2017.12.12	등록
9	22누7109	김용*	2017.12.06	등록
10	84수7503	최윤*	2017.12.04	등록
11	93조1710	김성*	2017.12.04	등록
12	43루8784	유상*	2017.12.04	등록
13	49무8641	이숙*	2017.12.01	등록
14	인천70거5373	김대*	2017.11.30	등록
15	53조4526	이혜*	2017.11.28	해제
16	06주6074	김중*	2017.11.20	해제
17	서울81무1318	양중*	2017.11.17	등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2018년도부터 시비보조금이 일부 지원됨으로써, 인천시와 군·구와의 지급기준이 상이 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바, 시와 군·구와의 지급기준 일원화를 통해 사전에 민원을 예방코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명칭 변경(안 제11조)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2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032-560-4291, FAX 032-560-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속”을 “인천광역시에 계속”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지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u>국가보훈 대상자</u>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7. (생략)</p>	<p>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u>국가보훈대상자</u>-----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u>국가보훈 대상자</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0조(보훈복지) ----- <u>국가보훈대상자에게</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u>보훈명예수당 등 지급</u>)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계속</u>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보훈명예수당</u> (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1조(<u>보훈예우수당 등 지급</u>) -- ----- ----- ----- <u>인천광역시에</u> <u>계속</u> ----- ----- <u>보훈예우수당</u>----- ----- ----- ----- -----.</p>

<p>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 청) (생략)</p>	<p>-----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7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 청)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취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훈예우수당)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17-11-1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호봉승급 근거마련으로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신설 등을 통해 위원들의 사기진작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및 당연직위원 구성(안 제5조)
- 전문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6조)
- 실무협의체 구성(안 제7조)
-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안 제14조)
- 회의수당(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2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032-560-4291, FAX 032-560-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체위원장”을 “일자리지원과장,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련분야 담당과장”을 각각 “관련 분야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자원연계팀장, 위기가정지원팀장”을 “희망복지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위원의 해촉)”을“(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을 “질병·품위손상”으로, “해촉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 직원”을 “상근 유급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업체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며,”를 “상근 유급직원의”로, “한다”를 “하며, 매년 1호봉씩 가산(加算)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대표협업체 :”를 “대표협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무협업체 :”를 “실무협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무분과 :”를 “실무분과:”로 한다.

제20조 중 “실무협업체”를 “실무협업체, 동 협업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 10. (생략)</p> <p><u>12. · 13.</u> (생략)</p> <p><u>14.</u> (생략)</p> <p>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인재육성과장, <u>실무협의체위원장</u>과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제3조(기능) ① -----</p> <p>-----</p> <p>-----</p> <p>-----</p> <p>-----</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 12.</u>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p> <p><u>13.</u> (현행 제14호와 같음)</p> <p>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p> <p>-----</p> <p>----- <u>포함, 성별을 고려하여</u> -----</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 <u>일자</u> -----</p> <p><u>리지원과장, 실무협의체위원장</u>-----</p> <p>-----</p> <p>-----</p>

1. ~ 5. (생략)

제6조(전문위원회) ① (생략)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관련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분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⑩ (생략)

제7조(실무협의체) ① ~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복지자원연계팀장, 위기가정지원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여성아동팀장, 보육행정팀장, 청소년팀장, 보건행정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실무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련 분야 담당 국장-----
-----.

③ -----
-- 관련 분야 담당 국장-----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희망복지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6. (생략)

⑤ (생략)

제8조(실무분과) ① ~ ③ (생략)

③ (생략)

제9조(동 협의체) ① ~ ④ (생략)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4. (생략)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7. (생략)

⑥ ~ ⑩ (생략)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①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분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동 협의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7.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질병·품위손상 -----

----- 위촉 해제할 -----.

제14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③ 협의회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7급 3호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생략)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 ⑤ (생략)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유급직원-----
-----.

1. ~ 3. (현행과 같음)

③ 상근 유급직원의 -----

----- 하며, 매년 1호봉씩 가산(加算)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대표협의체: -----
- 2. 실무협의체: -----
- 3. 실무분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수당) -----
-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20조(회의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참여 동 협의체 위원들의 사기진작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연 15명 인원이 확충될 것으로 사료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대상 인원	295명	310명	325명	340명	355명	1,625명
금액	35,400 (7월~)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 동 협의체 위원 15명씩/년 증가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합 계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자체재원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국비보조	-	-	-	-	-	-

※ 동별 협의체 위원 최대 : 20명, 총 420명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2018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완료됨에 따라 위원참석 수당 신설을 통해 동 협의체 위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작성자 :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장 송기용 (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자체수입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국고보조금							
세 출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사 업 비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재원 조달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의존원 재원	소 계						
	보조 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 세						
	조정교부						
자체 수입	소 계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지방세	35,400	74,400	78,000	81,600	85,200	354,6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취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